

## 신규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(안)  | 비고  |
|--|--|---|
| 제11조(임용의 제한) ①~④ 생략<br>⑤ <u>본 대학 소속 연구계약직은 산학협력단 소속을 겸한다</u><br>(신설) | 제11조(임용의 제한) ①~④ 현행과 동일<br>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강사 운영 세칙」 제3조(자격)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학과주임교수, 부속기관장 또는 부설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.<br>⑥ <u>본 대학 소속 연구계약직은 산학협력단 소속을 겸한다</u> | (신설) 학문후속세대(박사후연구원)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|
|  | <b>부 칙</b><br>1.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  |   |